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인도네시아 건강기능식품 사용 가능 유산균 원료 추가 승인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은 2021년 3월 인도네시아 건강기능 식품에 사용 가능한 유산균의 목록을 공고하였음

< 유산균 승인 목록 >

No	Nama Probiotik(Probiotic Name)	Jenis Strain(Strain Type)
1	Lactobacillus reuteri	RC-14 TM
2	Lactobacillus reuteri	DSM 17938
3	Lactobacillus reuteri	ATCC PTA 5289
4	Lactobacillus rhamnosus	TCC 7469
5	Lactobacillus rhamnosus	GR-1TM
6	Lactobacillus rhamnosus	R0011
7	Lactobacillus rhamnosus	GR 1
8	Lactobacillus rhamnosus	LR5
9	Lactobacillus rhamnosus	LMG25626
10	Lactobacillus rhamnosus	EMRO 014
11	Lactobacillus rhamnosus	HA-111
12	Lactobacillus acidophilus	ATCC 4356
13	Lactobacillus acidophilus	R0052
14	Lactobacillus acidophilus	W55
15	Lactobacillus acidophilus	CUL-60
16	Lactobacillus acidophilus	CUL-21
17	Lactobacillus acidophilus	BCMC 12130
18	Lactobacillus acidophilus	STCC1063
19	Lactobacillus acidophilus	LA-G80
20	Lactobacillus acidophilus	LA1
21	Lactobacillus acidophilus	LA-5
22	Lactobacillus acidophilus	LA14
23	Lactobacillus acidophilus	LA85
24	Lactobacillus acidophilus	LA1063

No	Nama Probiotik(<i>Probiotic Name</i>)	Jenis Strain(<i>Strain Type</i>)
25	Lactobacillus acidophilus	COREE
26	Lactobacillus acidophilus	BCRC 14079
27	Lactobacillus acidophilus	W 22
28	Lactobacillus acidophilus	HA-122
29	Lactobacillus helveticus	R0052
30	Lactobacillus casei	ATCC 393
31	Lactobacillus casei	W56
32	Lactobacillus casei subsp.	BCMC 12313
33	Lactobacillus casei	EMRO 002
34	Lactobacillus casei	EMRO 213
35	Lactobacillus casei	HA-108
36	Lactobacillus bulgaricus	ATCC 11842
37	Lactobacillus bulgaricus	EMRO 212
38	Lactobacillus bulgaricus	HA-137
39	Lactobacillus salivarius	W57
40	Lactobacillus lactis	BCMC 12451
41	Lactococcus lactis	W58
42	Lactobacillus plantarum	CBT LP3
43	Lactobacillus plantarum	LP01 AFID 1171
44	Lactobacillus plantarum	EMRO 009
45	Lactobacillus fermentum	EMRO 211
46	Bifidobacterium breve	ATCC 15700
47	Bifidobacterium breve	HA-129
48	Bifidobacterium longum	ATCC 15707
49	Bifidobacterium longum	NCC 3001
50	Bifidobacterium longum	BCMC 02120
51	Bifidobacterium longum	STCC0986
52	Bifidobacterium longum	BL-G301
53	Bifidobacterium longum	BL-05
54	Bifidobacterium longum	BG7
55	Bifidobacterium longum	OLB6001
56	Bifidobacterium longum	BCRC 14634
57	Bifidobacterium longum	W 108
58	Bifidobacterium longum	BB536
59	Bifidobacterium bifidum	R0071
60	Bifidobacterium bifidum	BCMC 02290
61	Bifidobacterium bifidum	CUL-20
62	Bifidobacterium bifidum	CBT BF3
63	Bifidobacterium bifidum	BF3
64	Bifidobacterium bifidum	BB14
65	Bifidobacterium bifidum	BCRC 11844
66	Bifidobacterium lactis	W52

No	Nama Probiotik(<i>Probiotic Name</i>)	Jenis Strain(<i>Strain Type</i>)
67	Bifidobacterium lactis	W51
68	Bifidobacterium lactis	BL-07
69	Bifidobacterium lactis	BL-04
70	Bifidobacterium infantis	R0033
71	Bifidobacterium infantis	BCMC 02129
72	Bifidobacterium infantis	HA-116
73	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lactis	CUL-34
74	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lactis	HNO19
75	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lactis	BB12
76	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lactis	BL-04
77	Streptococcus thermophilus	ATCC 19258
78	Streptococcus thermophilus	CBT ST3
79	Streptococcus thermophilus	ST3
80	Streptococcus thermophilus	HA-110
81	Saccharomyces boulardii Hansen	CBS 5926
82	Bacillus coagulans	SANK70258
83	Bacillus coagulans	SNZ 1969
84	Bacillus coagulans	MTCC 5724
85	Bacillus mesentericus	TO-A
86	Clostridium butyricum	TO-A

* 출처 : 식품의약품(BPOM) 홈페이지

2. 인도네시아 전통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유지 관리 제도 강화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BPOM)은 2021년 식품의약품(BPOM) 규정 4호에 전통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등록허가 제품은 1년에 최소 2회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부작용 관련 소비자 신고 사항의 유무에 대하여 의무 보고하도록 규정 함
-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 내용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BPOM)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 신고 보고는 웹사이트 <http://e-mesot.pom.go.id>, 이메일 efeksampling_otsk@pom.go.id, efeksamplingotsk@gmail.com 로 접수 할 수 있음

* 출처 : 전통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모니터링 메카니즘 관련 식품의약품 규정 2021년 4호

3.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일반 가공식품의 등록 유지 관리 사항 개정안

- 일반 가공식품의 포장디자인의 변경, 수정에 따른 디자인 변경 신고 후 이전 구 포장디자인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려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토록 허용
- 가공식품 허가 등록의 유효 기간 종료 후 기 유통 제품에 대하여 6개월간 유통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12개월간 유통 판매가 허용하도록 개정

* 출처 : 가공식품 등록에 관한 식품의약청(BPOM) 규정 2021년 7호

4. 조코위 대통령, 주류 산업 투자허가에 관한 대통령령 폐지하기로

- 정부는 대통령령 2021년 제10호 투자사업 부문에 명시된 주류(Miras) 산업 투자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
- 조코위 대통령은 비서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주류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개시와 관련한 대통령령을 철회한다고 밝힘
- ”다양한 종교 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음
-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주류 산업을 긍정적인 투자목록(DPI)에 포함하였음. 투자 금지 분야였던 주류 산업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 2021년 제10호에 수록되었고, 조코위 대통령이 3월 2일에 서명한 바 있음

* 출처 : KOMPAS(2021-03-03)

□ 자카르타 탄중프리옥 항구 수출입 항만시설 이용료 인상

- 4월 15일부터 탄중프리옥 항(Pelabuhan Tanjung Priok)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시설 이용 요금이 인상. 탄중프리옥 항을 운영하는 IPC(PT Pelabuhan Indonesia (Pelindo) II)는 지난 주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해 발표
-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보관 및 선적/하역(Lo-Lo)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금은 2021년 4월 15일 00:00시를 기준으로 적용됨
- 탄중프리옥 항 운영업체(IPC)의 홍보책임자 디니 엔디야니(Dini Endiyani)에 따르면 새로 적용되는 선적/하역 요금은 20피트 컨테이너인 경우 기존 Rp 187,500(14,475원)/box에서 Rp 285,500(22,040원)/box로, 40피트 컨테이너인 경우 Rp 281.300(21,716원)/box에서 Rp 428.250(33,060원)/box로 인상
- 또한 컨테이너 보관 요금은 20피트 컨테이너인 경우 1일 기준으로 Rp 27.200(2,099원)/box에서 Rp 42.500(3,281원)/box로 인상되며, 40피트 컨테이너인 경우 1일 기준으로 Rp 54.400(4,199원)/box에서 Rp 85.000(6,562원)/box로 인상. 단, 이번 요금 인상으로 기존에 청구되던 수수료 Rp 75.000(5,790원)/box는 없어짐
- 디니 엔디야니는 “적재기간이 3일 이상인 컨테이너에 대해 기존에는 최대 900%의 요금이 적용되었으나, 새로운 요금 체계에서는 최대 600%가 적용된다”고 설명. “탄중프리옥 항은 2008년 이후 한번도 요금을 변경한 적이 없다. 이번 요금 인상은 알려진 것만큼 크지 않다.”면서 요금 조정은 서비스 제공 업체와 이용자 간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 이번 인상 결정은 해양투자조정부(Marves)의 제안과 교통부 장관의 승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도네시아 수입업 자카르타협회(GINSI), 인도네시아 수출업 자카르타협회(GPEI), 인도네시아 물류 및 포워딩 협회(ALFI) 등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2월 23일 해양투자조정부는 판중프리옥 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의 요금 조정 권고안을 교통부에 제출했으며, 3월 8일 교통부가 이를 승인했음

* 출처 : Innitoday(2021-04-14)

III | **통관문제사례 관련**

(해당없음)

IV | **FTA 이행이슈 관련**

(해당없음)